

# 『러시아, 환경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3.

|           |             |                  |                  |
|-----------|-------------|------------------|------------------|
| TBT 통보 여부 | 미통보         | HS Code          | 전 제품             |
| 통보국       | 러시아         | 전년도 수출규모<br>(천불) | 4,529,043        |
| 작성기관      | KOTITI시험연구원 | 문의처              | tbt@kotica.or.kr |

## [ 목 차 ]

|                     |   |
|---------------------|---|
| 1. 규제 개요 .....      | 1 |
| 2. 제정 세부내용 .....    | 3 |
| 3. 관련 법령 및 표준 ..... | 7 |
| 붙임. 규제 참고자료 .....   | 8 |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내 폐기물 관리 개선 및 환경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환경부담금 징수 규정을 제정함

- \* 러시아 연방 정부 제1073호 결의안 「환경부담금 징수 절차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법률집, 2015년, 제42호, 제5786조);  
러시아 연방 정부 제986호 결의안 「환경부담금 징수 규칙 개정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법률집, 2018년, 제36호, 제5615조)

□ (규제요지) 본 제정안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재에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대상, 절차, 계산 방식, 기한, 예외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 본 규정은 러시아 내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러시아로 제품 수출 시 현지 수입업자에게 ‘환경부담금 부과’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계획’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TBT 통보번호 | 미통보  | 통보일 | -             |
|----------|--|-----|---------------|
|          |  | 고시일 | 2024년 12월 30일 |
| 규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세 징수, 계산, 상계 및 환급 규칙 승인, 결의안 제1990호, 2025년</li> <li>Approving the Rules for Collecting, Calculating, Offsetting and Refunding the Environmental Fee, Resolution No. 1990, 2025</li> </ul> |     |               |
| 규제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연방 정부</li> <li>Russian Federation Government</li> </ul>   |     |               |
| 요구사항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부담금</li> </ul>  |     |               |
| 제·개정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정 최종안</li> <li>- 본 규정은 기존 규정의 폐지 후, 신규 제정됨에 따라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취급함</li> </ul>  |     |               |
| 채택일      |  | -   |               |
| 의견수렴 마감일 |  | -   |               |
| 발효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1월 1일</li> </ul>  |     |               |
| 준수기한     |  | -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                                |   |                |  |
|--------------------------------|---|----------------|--|
| <p>적용대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제품, 포장</li> <li>▪ All Products, Packaging</li> </ul> |                |  |
| <p>對발행국 수출액<br/>(전년기준, 천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29,043</li> </ul>                                   | <p>HS Cod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제품</li> </ul> |

## 2

## 제정 세부내용

### □ 제정 개요

- (배경) 본 규정은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제24조의5에 근거, 러시아 내 제조업체, 수입업자,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
- (준수사항) 본 규정은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에 대한 환경부담금 등 의무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러시아 현지 수입업자 등에 의해 환경부담금 납부\* 및 관련 증빙, 제품의 자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계획이 요구될 수 있음

\* 수출제품에 따른 환경부담금 계산은 (붙임) 규제 참고자료의 표 2 '환경부담금 계산서 양식' 참조

### □ 제정 내용

- 러시아 연방 정부는 '환경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
  - 본 규정은 환경부담금 징수 대상, 계산 및 납부 방법, 초과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류를 규정하며, 관련 기존 규정은 대체되어 폐지됨

표 1. '환경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b>1. 규정의 목적</b>           |   |
| -                          | - 본 규정은 환경부담금 징수를 포함한 계산, 공제, 납부 및 반환(과납 또는 과징수 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
| <b>2. 용어 정의</b>            |   |
| -                          | - 상품 수입업자 : 유라시아경제연합 비회원국 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상품 (포장 포함)을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br>- 상품 및 포장 목록 : 러시아 연방 정부가 연방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 제24조의2 제5항에 따라 폐기물이 재활용되어야 하는 상품 및 포장의 목록<br>- 상품 제조업체 : 러시아 연방 내에서 상품 및 포장을 제조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br>- 재활용업체 : 상품 또는 포장의 사용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 <b>3. 환경부담금 징수 및 감독 기관</b> |   |
| -                          | - 러시아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에서 환경부담금 징수 및 감독을 담당<br>*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br>(홈페이지) <a href="https://rpn.gov.ru/">https://rpn.gov.ru/</a>   |
| <b>4. 환경부담금 납부 계좌 정보</b>   |   |
| -                          | - 납부 계좌 정보는 러 연방 자연자원감독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

| 구분                                   | 주요 내용  |
|--------------------------------------|--|
| <b>5. 환경부담금 납부 대상자 및 기준</b>          |  |
| -                                    | - 대상자 :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수행하지 않는 생산자(제조업체) 및 수입업자  |
| <b>6. EAEU 회원국 수입품의 환경부담금 계산 방법</b>  |  |
| -                                    | - 별첨 1 양식에 따라 계산하고,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   |
| <b>7. EAEU 비회원국 수입품의 환경부담금 계산 방법</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품의 통관 전 별첨 2 양식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단,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계획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환경부담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음)</li> <li>- 수입업자가 자체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추가 환경부담금을 별첨 3의 양식에 따라 계산하고 보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li> </ul> |
| <b>8. 환경부담금 산정 기준 및 보고 기간</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규정의 별첨 1 및 별첨 3에 따른 환경부담금 계산 양식에서 보고 기간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함</li> <li>- 단,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 내 상업 및 기타 활동을 시작한 경우, 보고 기간은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됨</li> </ul>   |
| <b>9. 환경부담금 납부 방법</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는 납세자의 국가 등록지에 따라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의 지역 기관이 연방 재무부에 개설한 계좌로 납부</li> <li>- 수입업자 및 재활용업체는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이 연방 재무부에 개설한 계좌로 납부</li> </ul>  |
| <b>10. 생산자 및 수입업자 중복 시 납부 방법</b>     |  |
| -                                    | - 납세자가 동시에 제조업체이자 수입업자인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이 연방 재무부에 개설한 계좌로 납부   |
| <b>11. 환경부담금 계산 시스템</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담금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 또는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계산됨</li> <li>- 기술적 문제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 공식 웹사이트의 전자 서비스를 통해 전자 서명된 전자 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함 (별첨 1~3 양식에 따라 작성)</li> </ul>   |
| <b>12. 환경부담금 납부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b>     |  |
| -                                    | - 환경부담금 납부 기한 위반, 환경부담금 계산서 미제출, 계산 시 부정확한 정보 사용, 환경부담금 미납 및 부분 납부 시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제조업체, 수입업자, 재활용 업체에게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명령을 발송   |
| <b>13.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조치</b>            |  |
| -                                    | - 시정 명령이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미납금을 징수   |
| <b>14. 환경부담금 초과 납부 시 공동 검토 요청</b>    |  |
| -                                    | - 환경부담금이 과대 계산 또는 과납부된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에 공동 검토 요청 신청서(별첨 4 양식)와 잘못 납부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 구분  | 주요 내용   |
|---|---|
| <b>15. 환경부담금 초과 납부 시 환불 절차</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은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의 공동 검토 후에 공제 또는 환급되며, 해당 검토는 별첨 5의 양식에 따른 공동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진행됨</li> <li>- 제조업체, 수입업자,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환경부담금 금액에 대한 공동 검토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해야 함</li> </ul>  |
| <b>16. 환경부담금 초과 납부 금액의 향후 납부 금액 공제 절차</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을 향후 납부할 금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별첨 6의 양식을 작성,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에 제출</li> <li>- 공제 신청서(별첨 6)를 바탕으로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과납부된 환경부담금을 향후 납부액에서 공제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별첨 7의 양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보함</li> <li>- 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동 검토 결과에 따른 기납부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공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공제가 불가능함을 통보함</li> </ul>   |
| <b>17. 초과 납부금 반환 신청</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의 반환 신청 시, 공동 검토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반환 신청서를 별첨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18조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해야 함</li> </ul>   |
| <b>18. 환경부담금 반환 신청 기한 및 첨부 서류</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마지막 환경부담금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반환 신청서를 서명한 사람의 권한 증명 문서, 또는 해당 문서의 사본</li> <li>· 공제/반환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조업체/수입업자의 위임장 및 사본</li> </ul> </li> </ul>  |
| <b>19. 반환 승인 및 거부 절차</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제조업체, 수입업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 반환에 대한 결정(별첨 9 양식)</li>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 반환 거부에 대한 결정(별첨 10 양식)</li> </ul> </li> </ul>  |
| <b>20. 반환 거부 사유</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납부된 환경부담금 반환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기한 후 신청, 서류 미첨부)</li> <li>· 반환 신청서에 반환 금액이 검토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li> </ul> </li> </ul>  |
| <b>21. 반환 신청 보완 절차</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환 신청서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10영업일 동안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통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환 신청서 상 환경부담금 납부 금액 초과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li> <li>· 반환 신청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li> <li>· 본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li> </ul> </li> <li>- 필요한 정보 및 문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과납부된 환경부담금에 대한 반환 거부를 결정</li> </ul> |

| 구분                             | 주요 내용  |
|--------------------------------|--|
| <b>22. 반환 거부 시 재신청 가능 여부</b>   |  |
| -                              | - 과납부된 환경부담금 반환 거부 결정이 되더라도 반환 신청서 재신청 가능  |
| <b>23. 반환 승인 후 지급 절차</b>       |  |
| -                              | - 본 규정 제19조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은 연방 재무부에 반환 처리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반환 신청서에 명시된 납부자 계좌로 반환 처리됨   |
| <b>24. 반환 시 이자 적용 여부</b>       |  |
| -                              | - 과납부된 환경부담금 반환 시, 과납부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
| <b>25. 전자 시스템을 통한 서류 처리 절차</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규정과 관련된 제조업체, 수입업자, 재활용업체와 연방 자연자원감독청 간 업무는 ‘폐기물 회계 시스템’의 전자 서비스를 통해 처리됨</li> <li>- ‘폐기물 회계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방 자연자원감독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된 전자 서비스를 통해 처리됨</li> </ul> |

## □ 관련 법령 및 표준

-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требления”
- 2023년 8월 4일자 №451-ФЗ “생산 및 소비 폐기물법 및 기타 법률 개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4 августа 2023 г. № 451-ФЗ
- 2016년 4월 9일자 №284 “환경부담금 세율 설정에 관한 정부령”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9 апреля 2016 г. № 284
- 2024년 6월 1일자 №750 “특정 제품 및 포장재 실험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정부령”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 июня 2024 г. № 750

**□ 관련 규제원문 출처**

- 2015년 10월 8일, 러시아 연방 정부 제1073호 결의안 “환경부담금 징수 절차에 대하여” (기존 규정, 폐기)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8 октября 2015 г. № 1073 "О порядке взима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бора"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 № 42, ст. 5786)
  - \* <http://static.government.ru/media/acts/files/0001201510090006.pdf>
  
- 2018년 8월 23일, 러시아 연방 정부 제986호 결의안 “환경부담금 징수 규칙 개정에 관하여” (기존 규정, 폐기)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августа 2018 г. № 986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взима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бора"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8, №36, ст. 5615)
  - \* <https://base.garant.ru/72030698/>
  
- 2024년 12월 30일, 러시아 연방 정부 제1990호 결의안 “환경부담금 징수 절차에 대하여” (본 제정안)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 декабря 2024 г. № 1990 "О порядке взима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бора"
  - \* <http://government.ru/docs/all/157310/>

□ 환경부담금 계산서

-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및 포장재에 관한 환경부담금 계산서로 본 규정의 '별첨 2' 양식에 해당

표 2. 환경부담금 계산서 양식(본 규정의 별첨 2)

|   |
|---|
| <p><b>환경부담금 계산서</b><br/><b>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비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 및 포장재에 대한</b></p> <p><b>제1부. 상품 및 포장재 수입업자에 대한 일반정보</b><br/><b>포장재를 포함한 상품 및 포장재의 수입업자에 대한 일반정보<sup>1</sup></b></p>   |
| <p>1. 법인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1. 법인의 조직 - 법적 형태 및 명칭 : (전체 명칭, 약칭(해당하는 경우), 상호 등)</li><li>1.2. 납세자 식별 번호(ИНН)</li><li>1.3. 세무 등록 사유 코드(КПП)</li><li>1.4. 법인의 소재지 주소</li><li>1.5. 법인의 주요 국가 등록번호(ОГРН)</li><li>1.6. 법인이 '법인 단일 국가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세부 사항</li></ul> |
| <p>* 법인 단일 국가 등록부(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ЕГРЮЛ)는 러시아 연방에서 운영되는 법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러시아 연방 세무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ФНС)이 관리하며, 등록된 모든 법인의 법적 상태 및 주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p>   |
| <p>2. 개인사업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1. 개인사업자의 성, 이름, 부칭(해당하는 경우)</li><li>2.2. 납세자 식별 번호(ИНН)</li><li>2.3. 개인사업자의 주소</li><li>2.4. 개인사업자의 주요 국가 등록번호(ОГРНИП)</li><li>2.5.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단일 국가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세부 사항</li></ul>  |
| <p>3. 러시아 국가 산업 분류 코드 (OK 029-2014, KDES 버전 2)</p>  |
| <p>4. 러시아 행정-영토 구분 분류 코드 (OK 019-95)</p>  |
| <p>5. 러시아 지방 자치구역 분류 코드 (OK 033-2013)</p>   |
| <p>6. 연락처 정보<br/>(전화번호, 이메일 주소(해당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담당자의 직책, 성, 이름, 부칭(해당하는 경우))</p>  |

## 제2부. 환경부담금 계산

1.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비회원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된 상품 및 포장재에 대한 환경부담금 계산<sup>2</sup>

표 1

| 번호<br>(No. II/II)                      | 상품 또는<br>포장재의<br>명칭 <sup>2</sup> | EAEU<br>외국무역<br>상품명세표<br>(ТН ВЭД<br>ЕАЭС) <sup>3</sup> 의<br>항목 명칭 | EAEU<br>외국무역<br>상품명세표<br>(ТН ВЭД<br>ЕАЭС) <sup>3</sup> 의<br>코드 | 수입된 상품<br>또는 포장재의<br>중량(M)<br>(단위: kg) <sup>4</sup> | 폐기물<br>처리 기준(N) <sup>5</sup> |
|--|----------------------------------|---|--|---|------------------------------|
| 1                                      | 2                                | 3   | 4  | 5   | 6                            |
| 그룹 번호 No. (상품 및 포장재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 |                                  |   |  |   |                              |
|  |                                  |   |  |   |                              |

| 처리 대상<br>폐기물의<br>중량(МәсТ)<br>(단위: kg) <sup>6</sup> | 환경부담금<br>기본<br>요율(BCЭC)<br>(단위: 루블) <sup>7</sup> | 계수 값<br>(KЭ) <sup>8</sup> | 계수를 적용한<br>환경부담금<br>요율(CЭC)<br>(단위: 루블) <sup>9</sup> | 납부해야 할<br>환경부담금<br>총액<br>(단위: 루블) <sup>10</sup> | 비고 <sup>11</sup> |
|--|--|---------------------------|--|---|------------------|
| 7  | 8  | 9                         | 10   | 11  | 12               |
| 그룹 번호 No. (상품 및 포장재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             |  |                           |  |   |                  |
|  |  |                           |  |   |                  |

1.1. 최종 납부해야 할 환경부담금 총액(단위: 루블)<sup>12</sup> :

2.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비회원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된 상품의 포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계산<sup>3</sup>

표 2

| 번호<br>(No. II/II)                      | 포장 명칭 <sup>13</sup> | EAEU 포장<br>안전성 기술<br>규정에 따른<br>포장 재료의<br>문자 표시<br>(TP TC<br>005/2011) <sup>14</sup> | EAEU 포장<br>안전성 기술<br>규정에 따른<br>포장 재료의<br>숫자 코드<br>(TP TC<br>005/2011) <sup>14</sup> | 러시아 연방<br>경제 활동<br>유형에 따른<br>상품 코드<br>(OK<br>034-2014,<br>KITEC<br>2008) <sup>14</sup> | EAEU 외환<br>경제 활동의<br>통합 상품<br>분류 코드<br>(TH BЭД<br>EAЭC) <sup>14</sup> | 수입된<br>포장의<br>중량(M)<br>(단위: kg) <sup>15</sup> |
|--|---------------------|---|---|--|---|---|
| 1                                      | 2                   | 3   | 4   | 5  | 6   | 7   |
| 그룹 번호 No. (상품 및 포장재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br>기준(N) <sup>5</sup>           | 처리 대상<br>폐기물의<br>중량(Мвст)<br>(단위: kg) <sup>16</sup> | 환경부담금<br>기본<br>요율(BCЭC)<br>(단위: 루블) <sup>7</sup> | 계수 값<br>(KЭ) <sup>8</sup> | 계수를<br>적용한<br>환경부담금<br>요율(CЭC)<br>(단위: 루블) <sup>17</sup> | 납부해야 할<br>환경부담금<br>총액<br>(단위: 루블) <sup>18</sup> | 비고 <sup>11</sup>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그룹 번호 No. (상품 및 포장재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 |   |  |                           |  |   |                  |
|  |   |  |                           |  |   |                  |

2.1. 최종 납부해야 할 환경부담금 총액(단위: 루블)<sup>19</sup> :

본 계산에 대한 첨부 문서:

| 첨부된 문서의 명칭 |  |
|------------|--|
| 1.         |  |

본 계산서 및 첨부된 문서에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계산서 제출 책임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개인 사업자)

성명 : (성, 이름, 부칭(해당하는 경우))

날짜 :

## 주석 설명(1/2)

1. 정보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는 국가 및 지방 서비스의 정보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통합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이라는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2. 표 1을 작성할 때, 먼저 2024년 기준으로 재활용 대상인 상품 및 포장 폐기물의 목록 제1 및 제2 항목에 따라 보고 기간 동안 재활용 대상이 되는 상품 및 포장의 그룹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고, 이어서 재활용 대상인 상품 및 포장의 목록에 포함된 개별 상품 항목을 한 줄씩 기재합니다. 이 목록은 2023년 12월 29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414호 「재활용 대상 상품, 포장 및 폐기물 목록과 재활용 기준 승인에 관하여」에 의해 승인된 "재활용 대상 상품 및 포장 목록"(이하 '상품 및 포장 목록')에 따라 작성됩니다.
3. 각 상품 및 포장의 명칭과 코드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외환 경제 활동의 통합 상품 분류(ТН ВЭД ЕАЭС)에 따라 기재됩니다.
4. 무게는 각각의 상품 및 포장 명칭에 대해 킬로그램 단위로 기재되며, 연방 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2-1조 2항에서 규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학적 반올림 규칙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5. 상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연방 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2조 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2023년 8월 4일 제451-ФЗ호 연방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의 개별 법률 개정」 제7조 5항에서 설정한 비율,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2조 4항에 따라 설정된 비율(N) 중 하나 이상으로 기재됩니다. 해당 열의 항목은 "상품 사용 폐기물 통합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의 개인 계정 전자 서비스, "국가 및 지방 서비스(기능) 통합 포털"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 또는 자연자원감독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된 전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상호작용 계산 양식(이하 "상호작용 계산 양식")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6. 상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대상 무게는 수입된 상품 또는 포장의 무게(열 5)와 재활용 기준(열 6)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계산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7. 환경부담금의 기본 요율(БСЭС)은 연방 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5조 9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가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해 설정한 값을 기재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계산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8. 상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추가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 물질의 반복 사용 시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 변화(재활용 가능한 사이클 포함), 이러한 폐기물에서 얻어진 재생 원료의 수요를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 계수 값(KЭ)을 기재합니다. 이는 연방 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5조 9항에 따라 회계 연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계산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9. 환경부담금 요율(СЭС)의 값은 기본 요율(БСЭС, 열 8)과 계수(KЭ, 열 9)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품 사용 폐기물 통합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의 개인 계정 전자 서비스, "국가 및 지방 서비스(기능) 통합 포털"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 또는 자연자원감독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된 전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상호작용 보고 양식(이하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10. 지불해야 할 환경부담금 금액은 환경부담금 요율(СЭС, 열 10)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무게(Мвст, 열 7)의 곱을 1,000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 작성됩니다.
11. 해당 항목은 필요할 경우(상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추가 설명, 보충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됩니다.
12. 지불해야 할 환경부담금의 총합(열 11의 모든 금액 합계)으로 결정된 값을 기재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13. 표 2를 작성할 때, 먼저 상품 포장 그룹 번호와 명칭을 상품 및 포장 목록의 III항에 따라 기재하고, 이어서 상품 포장의 각 명칭을 목록에 따라 한 줄씩 작성합니다. 포장은 제조된 재료(복합 재료로 구성된 포장의 경우 주요 재료의 질량과 구성 기준)에 따라, 또한 포장 재료의 유형별로 별도의 줄로 식별합니다. 이는 상품 목록 및 포장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된 상품의 포장에 대해 수입업자가 작성합니다.

## 주석 설명(2/2)

14. 표 2의 열 3~6은 수입된 상품의 포장 마킹에 따라 수입업자가 작성하며, 수입업자가 포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포장의 안전성" 기술 규정(TP TC 005/2011)에 따른 포장의 문자 표시와 숫자 코드, 또는 통합 러시아 경제 활동 상품 분류(OK 034-2014, KIEC 2008), 또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외환 경제 활동 통합 상품 분류(TH BЭД EAЭC)의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15. 수입된 상품을 포장한 각 포장 명칭에 대해 무게는 킬로그램 단위로 기재되며, 연방 법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하여" 제242-1조 2항에서 규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학적 반올림 규칙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1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무게는 수입된 상품을 포장한 전체 포장의 무게(열 7)와 재활용 기준(열 8)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계산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17. 환경부담금 요율(CЭC)의 값은 기본 요율(BCЭC, 열 10)과 계수(KЭ, 열 11)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18. 지불해야 할 환경부담금 금액은 환경부담금 요율(CЭC, 열 12)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무게(Мөcт, 열 9)의 곱을 1,000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19. 지불해야 할 환경부담금의 총합(열 13의 모든 금액 합계)으로 결정된 값을 기재합니다. 해당 항목은 상호작용 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